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7
----------	-----

제출년월일 : 2017.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관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품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품목을 구체화(안 제20조의2)

나.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안 제40조제4호)

○ 건축물 매각 기준일 : 2003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
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등 변경(안 제20조, 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안 제63조, 안 제63조의2)

○ 이자율 연 4퍼센트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변경

라. 공유토지의 분필시 감정평가의뢰 범위 확대(안 제66조)

○ 감정평가의뢰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까지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4. 21. ~ 4. 28.)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 영향평가 심사결과 : 원안동의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영 제14조제6항”을 “영 제14조제7항”으로,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으로 생산·전시”를 “생산·전시”로, “있다”를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2조1호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35조제3항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를 각각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3조의2 중 “연 4퍼센트”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 ④ (생 략)</p> <p>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u>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u>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영 제14조제7항----- ----- -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u></p> <p>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 ----- ----- ----- <u>생산·전시</u> ----- ----- ----- <u>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u>」 제2조1호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u>품질보증 농특산물</u></p>

<신 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
(생 략)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
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
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생 략)

②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
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
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에
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시
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에
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 5. (현행과 같음)

③ -----

----- 시
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에
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④·⑤ (생략)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 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2.·3. (현행과 같음)

4. ----- 2012년 12월 31일 -----

따라 매각 하는 경우

가. 2003년 12월 31일(「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5가구 이상

가. 2012년 12월 31일 -----

나. 2012년 12월 31일 -----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
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
각 할 수 있다.

5. (생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
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4퍼센트
로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

-----.

5.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
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
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을 적용한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관계법령 발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수 품질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평창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전통식품으로서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 변경, 과오 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변경
(현행 4%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에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COFIX 지수 1.56%))

2. 미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침부 사유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정의
연락처	(033) 330 -2270